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김현미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스마트도시 조성·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민관공동출자법인의 시행자 요건을 구체화하고, 스마트도시 인증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며,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한 세부기준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민관공동출자법인에 대한 사업시행자 요건 구체화 (안 제17조)

민관공동출자법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출자요건을 구체화함

나.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운영·관리 체계화 근거 마련 (안 제22조)

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·관리 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 규정

다.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방법 등 구체화 (안 제31조)

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평가기관 지정, 평

가 의뢰 등 평가 방법을 구체화함

라. 국가 시범도시 등 원활한 스마트시티 업무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정

비 (안 별표3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1. 16. ~ 2020. 02. 25.) 결과, 특기
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일부개정령안

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
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법 제1
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20퍼
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.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한정한다)

⑦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공모기준
및 절차,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
제22조제6항 중 “필요”를 “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
필요”로 한다.

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인증기준”을 “인증기준 및 방법 등”으
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
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(現場實査)”를
“(現場實査)(이하 “인증평가”라 한다)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
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인증절차 및 인증방법

3.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

4. 수수료

5.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는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탁업무	위탁 대상기관·단체의 범위
1. 법 제27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에 대한 추진·지원	지원기관
2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 스마트도시산업 해외진출 지원	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(이하 “한국토지주택공사”라 한다) 「해외건설촉진법」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
3. 제31조제2항에 따른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및 법 제33조에 따른 인증 취소 사유의 해당 여부 검토	국토연구원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

	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(이하 “한국건설기술연구원”이라 한다)
4. 제35조제3항에 따른 총괄계획가 지원	스마트도시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
5.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국가시범도시 지원	지원기관 스마트도시협회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 「정보통신산업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「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」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에 따라

신·구조문대비표

설립된 한국로봇융합연구원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제17조(사업시행자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7조(사업시행자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 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 합계가 2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.(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한정한다)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 ⑦ 국가시범도시를 조성할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공모기준 및 절차,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.
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~ ⑤ (생략) 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, 그 밖에 <u>필요한 사항</u>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	제22조(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 <u>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</u> ----- ----.
제31조(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증하려면 미리 다음	제31조(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) ① ----- ----- -----
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기준(이하 “인증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1. (생 략)

2. 평가항목별 목적, 방법, 배점, 산출기준, 최소기준 등 세부평가기준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(現場實査)를 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.

<신 설>

----- 인증기준 및 방법 등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인증절차 및 인증방법

3.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및 방법

4. 수수료

5.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

② -----

--(現場實査)(이하 “인증평가”라 한다)-----.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평가기관에 인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④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·단체는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738